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법 준수 사항 자체 점검 안내

*주요 점검 사항(미비한 사항 있는 경우 시정하여 운영)	
- 강사 변경 미등록	- 강사 채용, 해임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신고(15일 이내) - *학원장도 교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사 등록 필수 - *단기 시간제(파트타임) 강사도 등록 필수 - *교습행위(질의응답 포함)를 하는 경우 강사 등록 필수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실시(학원에 회신서 보관) - ★위반 시 과태료 550만원이므로 반드시 모든 직원(강사, 사무원, 차량운전자, 미화원 등) 채용 전 실시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 교습비로 등록하지 않은 항목 징수 불가 (학원(교습소) 내 교재 판매 금지로 교재비는 등록 및 징수 불가) ○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 (ex. 교육청에 10만원에 교습비 등록 후 11만원 징수) ○ 고양시 분당 단가 기준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 교습비 변경이 있을 때 교육청에 신고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 (광고 범위)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 * 인쇄물, 인터넷 등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이 포함. 모든 게시물마다 교습비등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블로그 프로필, 공지사항 등에 게시. - * 학습자는 다양한 인터넷 경로를 통해 광고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각 인터넷 광고 수단(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마다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추가되는 교습과정이 있을 때 교육청에 신고
- 시설 임의 변경	○ 내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축소 시 교육청에 신고(구조 변경 없이 강의실을 사무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공간을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 무단 확장이므로 반드시 신고 후 사용해야 함
- 게시사항 미게시	- 교습비(학원 내외부), 교습비 반환기준, 강사 명단, 학원 운영등록증 게시
- 장부(서류) 미비치	-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교습비 관련 내용 작성, 전산/수기 모두 가능),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 명부, 원칙 비치
- 교습시간 위반	- 22시 이후 교습 불가(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독서실은 제외
- 명칭 사용 위반	-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명과 실제 학원명은 일치해야 함. 다른 경우 교육청에 명칭 변경 신고
- 허위·과대 광고	- ex.) 광고 시 학원이 아닌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 학원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후 교육청에 증권 서류 발송 (팩스: 031-907-8093, 이메일: gkrdnjs21@korea.kr)
- 어린이 통학 차량	- ○ 어린이(유아~초등학생) 대상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동승보호자 지정, 안전교육 이수 등 관련 법규 준수 - ○ 통학버스관리시스템 등록 후 입력
-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매년 이수(강사 및 전 직원)
- 무단 폐원/휴원	- 학원 폐원 후 1개월 내 교육청에 신고 - 1개월 이상 휴원 시에는 교육청에 신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항상 안내하고 있는 학원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최신화하여 올리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접속 시 네이버에서 고양교육지원청 검색 → 고양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의 안내 클릭 → 공지사항 최상단 ‘학원(독서실) 학원법 준수 사항 자체 점검 안내’ 게시물 클릭)